

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주 문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0. 1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. 10. 2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00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1차기획재정위원회(2002. 10. 8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국제통상과장 이종훈)

가. 제안이유

○ 시정의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또는 타시·군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는 명예시민증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여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면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외국인, 재외동포 및 타시군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 시민증서 수여대상 기준을 정함(안 제2조)
-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수여시기의 일시를 방지하고 수여의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.
- 외국인, 재외동포 및 타시군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안을 정함(안 제4조)
- 명예시민증서를 수령자의 권리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조례가 개정되면 절차가 간소화되는지	○ 그렇습니다
○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의 혜택은	○ 국내거주자는 부천시주관 행사에 초청하고 시정 홍보지를 통한 시정 추진상황을 공지하고 공공시설 이용 권한 등 부여. 국외거주자는 피판등 시주관국제행사에 시민으로 초청하여 참관하게 함.
○ 규칙은 정하였는지?	○ 마련할 계획입니다
○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증서의 남발이 우려되어 표창장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?	○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폐회기간중에는 시기를 놓쳐 주지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함. 예)월드컵 경기후 부천SK 이을용 선수의 경우 의회가 폐회기간 중이어서 수여기회를 일실하였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개정내용 중 외국인에 한하여는 폐회기간에도 수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여 의결하여 주든지 아니면 전면 개정이므로 원안의결하여준이 타당함.

나. 반대토론

-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여하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즉흥적으로 수여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명예시민증서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남발방지를 위해서도 부결함이 타당 함.

5. 심 사 결 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명예시민증서가 남발되지 않도록 수여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가급적이면 의회 회기기간중에 의회의결을 득하여 수여할수 있도록 하기바람.

부천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4호
의결 년월일	2002. 10. 17 (제100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10. 1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개 정 이 유

-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또는 타시·군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는 명예시민증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여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면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

□ 주 요 골 자

- 외국인, 재외동포 및 타시군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 시민증서 수여대상 기준을 정함(안 제2조)
-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수여시기의 일실을 방지하고 수여의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3조)
- 외국인, 재외동포 및 타시군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안을 정함(안 제4조)
-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의 권리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

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타시군 인사에게 수여하는 부천시명예시민증서(이하 "명예시민증서"라 한다)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여대상) ①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타시군 인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국내외적으로 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
2. 사회, 경제, 문화, 예술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
3. 자원봉사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자
4. 지역개발을 위한 직·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
5. 기타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부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(수여결정)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제4조(수여방법) ①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, 타시군 인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.

②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.

제5조(수여자의 권리등) ①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.

②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.

제6조(취소)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 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기록유지)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명 예 시 민 증 서(제4조 관련)

제 호

명 예 시 민 증

(성 명)

대한민국 부천시장은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, 우리 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 시민증을 드립니다.

년 월 일

대한민국 부천시장 ○ ○ ○ 직인

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

(name)

To applaud your devotion to Bucheon Ci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,

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.

month day year

(sign)

Mayor of Bucheon City
Republic of Korea

[별제 제2호서식]

명 예 시 민 증 서(제4조 관련)

제 호

명 예 시 민 증

주 소

(직위 또는 직업, 성명)

부천시장은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
기리고, 우리 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
민의 뜻을 모아 명예 시민증을 드립니다.

년 월 일

부 천 시 장 ○ ○ ○

직인

부천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(전문) [1984 . 2. 13 조례 제618호]

개정 1988. 4. 30 조례 제874호
1993. 8. 9 조례 제1236호
1999. 7. 29 조례 제168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 교포 또는 타시군 인사에게 수여하는 부천시민증서 (이하 "명예 시민증서"라 한다)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증서수여) ① 명예시민증서는 별표서식에 의하여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(권리의무)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4조(취소)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 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1984. 2. 13 조례 제618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8. 4. 30 조례 제874호>
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3. 8. 9 조례 제1236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7. 29 조례 제1681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명 예 시 민 증

국 적 :

성 명 :

주소 또는 소속 :

생년월일 :

대한민국 부천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부천시 명예 시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.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부천시의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.

서 기 년 월 일

대한민국경기도부천시장 ㉠

HONORARY CITIZENSHIP

NO

Nationality :

Name :

Address or Organization :

Date of Birth :

On behalf of the citizens I undersigned Mayor of Bucheon City,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(Mane) an honorary citizenship of Bucheon city in order to verify this I have fixed my signature and the Seal of the city of Bucheon this is presented on(datd and yar)

Mayor of Bucheon City
Kyong Gi Do
The Republic of KOREA